

새마을문고중앙회 정관

제정	1961.	11.	10
개정	1962.	7.	11
	1968.	1.	15
	1970.	5.	20
	1974.	2.	23
	1975.	9.	23
	1976.	5.	7
	1977.	3.	30
	1978.	5.	24
	1981.	4.	7
	1983.	1.	11
	1985.	4.	9
	1990.	3.	19
	1998.	7.	21
	1998.	12.	11
	2000.	4.	19
	2001.	7.	28
	2002.	4.	6
	2005.	4.	12
	2013.	1.	28
	2018.	11.	12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새마을문고(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. 이하 “새마을작은도서관”이라 한다)운동을 추진하여 국민의 정서 순화와 새마을 정신의 계발을 촉진하고 독서를 통한 지식 보급으로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, 문화적 자질향상에 기여한다. <개정 2013.1.28>
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새마을문고중앙회” 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(사무소)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·도 및 시·군·구 소재지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①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

다.

1.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도육성 <개정 2013.1.28>
2. 시·도, 시·군·구 새마을문고지부의 지도 감독
3. 새마을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<개정 2013.1.28>
4. 문고지도자 및 회원 교육 <개정 2013.1.28>
5. 새마을작은도서관용 도서 및 기관지 간행 <개정 2013.1.28>
6. 도서의 수집 및 배부
7. 교육·문화·예술동아리 조직 및 재능기부활동 <개정 2013.1.28>
8. 독서(동아리)회, 독서대학 운영 <개정 2013.1.28>
9. 이동도서관의 설치 운영 <개정 2013.1.28>
10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

②제1항 제10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감독관청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(법인 이익의 공여 및 운영 원칙)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②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,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 2 장 회 원

제6조(회원의 자격 및 선임) 회원은 본회 임원 및 시·도지부 회장, 부회장으로 하며 회원의 입회절차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의무) ①본회의 회원은 정관에 정한 임원 선출권, 피선거권, 각종 회의의 의결권 및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.

1. 새마을운동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2. 본회의 정관, 제 규정 및 결정사항의 준수
3.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

제8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) ①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②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, 본회의 명예와 신용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.

제9조(상벌) ①새마을문고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

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.

1. 임원 선출 과정에서 회칙에 위배된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
2. 적법 절차 없이 임의로 기금, 회비 등의 공금을 유출했을 때
3. 건강 등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
4.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
5.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행을 했을 때
6. 본회 회원으로서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

③중앙회 새마을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회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④징계는 경고·해임·제명으로 구분하고 제명은 총회 의결에 의한다.

⑤본회 총회, 윤리위원회, 또는 중앙회 새마을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제명된 회원은 그 의결일로부터 본회 및 지부관련 직위(일선지도자 포함)가 해제된다.

제 3 장 임 원

제10조(임원)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 장 1인
2. 부회장 2인
3. 이 사 30인 이내 (회장, 부회장 포함)
4. 감 사 2인
5. 총 무 1인

제11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

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.28>

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단, 보선된 임원의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③시·도지부 회장인 자가 본회 임원으로 위촉될 경우 그 임원의 임기는 본직의 임기에 의한다.

④회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기 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다음 날로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 개최되는 총회일까지로 한다.

제12조(임원의 선임방법)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본회 회장은 중앙회 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부회장, 감사, 총무는 본회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본회 회장, 부회장, 시·도지부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선임직으로 한다.

③제2항에 의한 임원 중 선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시·도회장 또는 부회장의 직을 면한 경우에는 당해 임원직은 자동 상실된다.

④본회 회장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본회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제4항 및 제5항의 사임서는 접수와 동시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.

⑦본회 회장은 시·도지부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.

⑧시·도지부 회장으로 재임 중인 자가 본회 회장으로 입후보할 경우 현직을 사퇴하여야 한다.

제13조(회장, 부회장, 이사, 총무의 직무)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리한다.
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해당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한다.

④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고, 회장단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무를 관리한다.

제14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본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2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필요할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
4. 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을 진술하는 일

제15조(명예회장 및 고문) ①본회에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.
②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의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③명예회장과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16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
4. 기타 중요사항

제17조(총회의 구분 및 소집) ①총회는 본회의 임원 및 시·도지부 회장,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②정기총회는 년 1회 년도 초에, 그리고 임시총회는 본회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③본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8조(의결 정족수)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표결 결과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출석이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본회 회장 또는 감사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④총회의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다.

제19조(소집의 특례) ①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3.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20조(제척사유) 금전 및 재산관계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 그 회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 5 장 이 사 회

제21조(이사회) ①본회에 이사회를 둔다.

②이사회는 본회의 회장, 부회장, 이사, 총무로 구성한다.

제22조(이사회 기능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
2.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
3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4.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5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회비 부가 및 징수에 관한 사항
7. 기타 중요 사항

제23조 (의결 정족수)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
②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③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2인이 서명한다.

제24조(이사회 소집) 이사회는 본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5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26조(서면회의) 본회 회장은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회의로써 이사회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 6 장 윤리 위원회

제27조(윤리위원회) ①본회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를 둔다.

②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회장, 감사, 총무,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한다.

③외부인사 1인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28조(기능)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포상에 관한 사항
2. 회원의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
3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4. 시·도지부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한 상벌에 관한 사항

제29조(회의 및 의결) ①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및 시·도지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였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

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윤리위원중 징계사유 당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.

제7장 재산 및 회계

제30조(재정)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회원의 회비
2. 임원의 출연금
3.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4. 찬조금 기타 수입금

제31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32조(예산 및 결산)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관청에 제출한다.

제33조(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장 사무국 및 전문위원회

제34조(사무국) 본회의 사무집행기관은 중앙회의 사무국에서 관장한다.

제35조(전문위원회) ①본회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도위원회, 기타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전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9장 지부조직

제36조(지부설치) 본회는 시·도, 시·군·구(출장소 포함)에 지부를 두며, 필요할 때에는 읍·면·동에 분회를 둘 수 있다.

제37조(지부임원) ①시·도지부 및 시·군·구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2인
3. 이사 30인 이내(회장, 부회장 포함)
4. 감사 2인

5. 총무 1인

②지부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.28>

제38조(시·도지부 임원선임) ①시·도지부 회장은 시·도지부 총회에서 선출하여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본회 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.

②시·도지부 부회장, 이사, 감사, 총무는 시·도지부 총회에서 선출하여 시·도지부 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.

③시·도지부의 임원은 문고 운동에 대한 관심도, 재정후원 능력, 사회적 지명도 및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제39조(지부 사무국) ①지부의 사무집행 기관으로 지부 사무국을 둔다.

②지부 사무국은 지부 사무국장(시·군·구지부는 간사)이 관장한다.

제40조(시·군·구지부 임원선임) ①시·군·구지부 회장은 시·군·구지부 총회에서 선출하고, 시·도지부 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.

②시·군·구지부 부회장, 이사, 감사, 총무는 시·군·구지부 총회에서 선출하여 시·군·구지부 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.

③시·군·구지부의 임원은 문고운동에 대한 관심도, 재정후원 능력, 사회적 지명도 및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제41조(지부설치 및 운영규정) 시·도, 시·군·구지부 및 읍·면·동분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0 장 보 칙

제42조(정관개정)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43조(해산)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4조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 단체에 기증한다.

제45조(법령규정의 준용 및 제정 등) ①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다만, 본회에서 제정하여야 할 규정으로서 유사한 사항에 관해서 본회에서 따로 제정하지 아니하고 중앙회의 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(1961. 11. 10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1962. 7. 1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1968. 1. 15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(1970. 5. 20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1974. 2. 23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(1975. 9. 23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(1976. 5. 7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(1977. 3. 30)부터 시행한다.

(경과규정) 이 정관 개정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정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.

(경과규정) 시·도, 시·군·구지부 회장의 임기도 이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

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(1981. 4. 7)부터 시행한다.

(경과규정) 이 정관 개정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.

(경과규정) 시·도, 시·군·구지부 회장의 임기도 이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(1983. 1. 11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(1985. 5. 1)로부터 시행한다.

(경과규정) 이 정관 개정당시의 시·도 및 시·군·구지부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1990. 3. 19)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새마을문고중앙회 직제 등 사무국 집행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제규정을 따른다. (1998. 7. 21)

부 칙

① (시행일)이 정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이 정관 시행당시 새마을문고중앙회 임원 및 지부 조직 임원

으로 재임 중인 자는 개정된 정관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보며, 임기 또한 개정정관에 따른다. (1998. 12. 11)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정관의 시행으로 초과된 부회장, 이사는 잔임기간 만료시까지 구 정관의 정원에 의한다.(2000. 4. 21)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01. 7. 28)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02. 4. 6)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05. 4. 12)

부 칙

- (시행일)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13. 1. 28)

부 칙

- (시행일)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(2018년 11월 12일)로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(보선된 임원의 임기를 포함한다)는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1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

새마을문고 시·도지부 회칙 준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회는 새마을문고중앙회○○○시·도지부(이하 “본 지부”라 한다.)라 한다.

제2조(사무소) 본 지부의 사무소는 ○○○시·도에 둔다.

제3조(목적) 본 지부 및 관내의 시·군·구지부와 새마을작은도서관(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. 이하 “새마을작은도서관”이라 한다)의 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독서보급을 통한 주민의 정신계발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1.28>

제4조(사업) 본 지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설치, 등록, 지도 육성 <개정 2013.1.28>
2. 시·군·구지부 및 읍·면·동 분회의 지도감독
3. 문고지도자 및 회원 교육 <개정 2013.1.28>
4. 새마을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<개정 2013.1.28>
5. 도서의 수집, 배부
6. 독서(동아리)회, 독서대학 운영 및 이동도서관의 설치 육성 <개정 2013.1.28>
7. 새마을작은도서관용 도서 및 기관지 보급 <개정 2013.1.28>
8. 우수 새마을작은도서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<개정 2013.1.28>
9. 새마을문고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10. 교육·문화·예술동아리 조직 및 재능기부활동 <신설 2013.1.28>

11. 기타 본 지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구성) ①본 지부는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한다.

②본 지부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,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 2 장 회 원

제6조(회원의 자격 및 선임) 회원은 본 지부 임원 및 시·군·구지부 회장, 부회장으로 하며 회원의 입회절차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 의무, 탈퇴 및 제명) ①본 지부의 회원은 정관에 정한 임원 선출권, 피선거권, 각종 회의의 의결권 및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.

1. 새마을운동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2. 본회의 정관, 제 규정 및 결정사항의 준수
3.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

③본 지부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④본 지부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, 본 지부의 명예와 신용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8조(임원) ①본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 장 1인
2. 부회장 2인
3. 이 사 30인 이내 (회장, 부회장 포함)
4. 감 사 2인
5. 총 무 1인

② 본 지부는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.

③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제9조(임원 선출)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한 후

중앙회 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.

②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본 지부 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.

③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 지부의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④시·도지부의 임원은 문고 운동에 대한 관심도, 재정 후원능력, 사회적 지명도 및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⑤회장은 시·군·구지부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.

⑥시·군·구지부 회장으로 재임 중인 자가 회장으로 입후보할 경우 현직을 사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.28>

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단, 보선된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05. 4. 12>

③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④회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기 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다음 날로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 개최되는 총회일까지로 한다.

제11조(임원의 직무) ①회장은 본 지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에서 선출된 시·군·구지부 회장을 위촉한다. <개정 2013.1.28>
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칙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.

④감사는 본 지부의 재정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.

⑤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고, 회장단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무를 관리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12조(총회 및 소집)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
②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개최한다.

③총회는 본 지부 임원 및 시·군·구지부 회장, 부회장으로 구성한다.

- ④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⑤회장의 유고 시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본 지부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의 임시의장은 총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⑦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- ⑧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

제13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임원의 선출 <개정 2005. 4. 12>
- 2.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
- 3.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
- 4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
- 5.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- 6. 지부 운영에 관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및 예산의 수급
- 7. 관내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지도 육성 및 지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<개정 2013.1.28>

제14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①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회원의 제명 및 임원의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- ③본 지부와 회원과의 관련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.
- ④총회의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다.

제15조(이사회)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<개정 2005. 4. 12>
- 2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<개정 2005. 4. 12>
- 3. 회비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
4. 지부운영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예산의 수급
5. 관내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지도 육성 및 지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<개정 2013.1.28>

- ②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, 이사, 총무로 구성한다.
- ③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⑤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다.

제16조(상벌 및 윤리위원회) ①새마을문고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

- ②회원이 본 지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.
- ③징계는 경고·해임·제명으로 구분하고 제명은 총회 의결에 의한다.
- ④윤리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회장, 감사, 총무,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한다.
- ⑤위원장은 외부인사 1인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1. 포상에 관한 사항
 2. 회원의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
 3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 4. 시·군·구지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한 상벌에 관한 사항

제5장 사 무 국

제17조(사무국) ①본 지부의 사무 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관장한다.

- ②사무국 직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지침에 한한다.
- ③사무국 직원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시·도지부의 직무를 겸무할 수 있다.

제 6 장 사 업 계 획 및 회 계

제18조(사업계획 및 예산) 본 지부는 중앙회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2주일 이내 중앙회장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제19조(회계) ①본 지부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총회와 이사회가 조달하는 찬조금
2.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기타 수입금

②회계지출은 소정의 승인절차를 거친 사업계획의 수행을 위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.

제20조(사업보고 및 결산) ①본 지부의 사업보고 및 결산서는 감사의견서를 첨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익년도 2월중으로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전항의 경우 중앙회 회장은 결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결산상의 결손은 시·도지부에서 책임져야 한다.

제 7 장 보 칙

제21조(법령규정의 준용) 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197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198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198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1985년 5월 1일 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1990년 3월 19일 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00년 4월 21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01년 7월 28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02년 4월 6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05년 4월 12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13년 1월 28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(보선된 임원의 임기를 포함한다)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1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

새마을문고 시·군·구지부 회칙 준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회는 새마을문고중앙회○○○시·군·구지부(이하“본 지부”라 한다.)라 한다.

제2조(사무소) 본 지부의 사무소는 ○○○시·군·구에 둔다.

제3조(목적) 본 지부 및 관내의 읍·면·동분회와 새마을작은도서관(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. 이하 “새마을작은도서관”이라 한다)의 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독서보급을 통한 주민의 정신계발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1.28>

제4조(사업) 본 지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설치, 등록, 지도 육성 <개정 2013.1.28>
2. 읍·면·동분회의 지도 감독
3. 문고지도자 및 회원 교육 <개정 2013.1.28>
4.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<개정 2013.1.28>
5. 도서의 수집 배부

6. 독서(동아리)회, 독서대학 운영 및 이동도서관의 설치 육성 <개정 2013.1.28>
7. 새마을작은도서관용 도서 및 기관지 보급 <개정 2013.1.28>
8. 우수 새마을작은도서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<개정 2013.1.28>
9. 시·도지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10. 교육·문화·예술 재능기부동아리 조직 및 재능기부활동 <개정 2013.1.28>
11. 기타 본 지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구성 및 운영원칙) ①본 지부는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한다.

②본 지부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,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 2 장 회 원

제6조(회원의 자격 및 선임) ①회원은 본 지부 임원 및 읍·면·동분회 회장, 부회장과 교육·문화·예술 재능기부 동아리 회장으로 하며 회원의 입회절차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 <개정 2013.1.28>

②재능기부 동아리 회원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고지도자로 위촉한다. <신설 2013.1.28>

제7조(회원의 권리 의무, 탈퇴 및 제명) ①본 지부의 회원은 정관에 정한 임원 선출권, 피선거권, 각종 회의의 의결권 및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.

1. 새마을운동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2. 본회의 정관, 제 규정 및 결정사항의 준수
3.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

③본 지부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④본 지부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, 본 지부의 명예와 신용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8조(임원) ①본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 장 1인
2. 부회장 2인
3. 이 사 30인 이내 (회장, 부회장 포함)
4. 감 사 2인
5. 총 무 1인

②본 지부에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둔다

③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제9조(임원 선출) ①회장은 시·군·구지부 총회에서 선출하고 시·도지부 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.

②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본 지부 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.

③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 지부의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④본 지부의 임원은 문고운동에 관한 관심도, 재정 후원능력, 사회적 지명도 및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⑤회장은 읍·면·동분회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.

⑥읍·면·동분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자가 회장으로 입후보할 경우 현직을 사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.28>

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단, 보선된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05. 4. 12>

③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④회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기 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다음 날로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 개최되는 총회일까지로 한다.

제11조(임원의 직무) ①회장은 본 지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에서 선출된 읍·면·동분회 회장을 위촉한다. <개정 2013.1.28>
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칙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
- ④감사는 본 지부의 재정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⑤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고, 회장단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무를 관리한다.

제4장 총회 및 이사회

제12조(총회 및 소집)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
-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개최한다.
- ③총회는 본 지부 임원 및 읍·면·동분회 회장, 부회장으로 구성한다.
- ④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⑤회장의 유고 시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본 지부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 임시의장은 총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⑦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.
- ⑧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 <개정 2005. 4. 12>
2.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
3.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
4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
5. 회비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6. 지부운영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예산의 수급
7. 관내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지도 육성 및 지부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<개정 2013.1.28>

제14조(총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) ①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회원의 제명 및 임원의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③본 지부와 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.

④총회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다.

제15조(이사회)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1. 예산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3. 회비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4. 지부 운영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예산의 수급
5. 관내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지도 육성 및 지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<개정 2013.1.28>

②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, 이사, 총무로 구성한다.

③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⑤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다.

제16조(상벌 및 윤리위원회) ①새마을문고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

②회원이 본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.

③징계는 경고·해임·제명으로 구분하고 제명은 총회 의결에 의한다.

④윤리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회장, 감사, 총무,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 1인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⑤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포상에 관한 사항
2. 회원의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
3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
제5장 사 무 국

- 제17조(사무국)** ①본 지부의 사무집행 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둔다.
- ②사무국에는 문고 지도요원으로서 간사 1인을 두며 지부 실정에 따라 시·도지부와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사무국은 간사가 관장한다.
- ④사무국 직원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시·군·구지회의 직무를 겸무할 수 있다.
- ⑤간사에 대한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지침에 의한다.

제 6 장 사 업 계 획 및 회 계

- 제18조(사업계획 및 예산)** ①본 지부는 시·도지부가 정하는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2주일 이내 시도지부 회장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05. 4. 12>
- ②본 지부의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지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.28>

제19조(회계) ①본 지부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총회 및 이사회가 조달하는 찬조금
2.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기타 수입금

②회계지출은 소정의 승인절차를 거친 사업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집행된다.

제20조(사업보고 및 결산) ①본 지부의 사업보고 및 결산서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,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초 2개월 이내에 시도지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.28>

②전항의 경우 시·도지부 회장은 결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결산의 결손은 시·군·구지부에서 책임져야 한다.

제 7 장 보 칙

제21조(법령규정의 준용) 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197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198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198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1985년 5월 1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1990년 3월 19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00년 4월 21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01년 7월 28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02년 4월 6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05년 4월 12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13년 1월 28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(보선된 임원의 임기를 포함한다)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1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

새마을문고 읍·면·동분회 회칙 준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회의 새마을문고○○읍(면·동)분회라 한다.

제2조(사무소) 사무소는 읍·면·동에 둔다.

제3조(목적) 관내 새마을작은도서관(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. 이하 “새마을작은도서관”이라 한다) 운영 및 독서문화운동을 통한 주민의 정신계발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<개정 2013.1.28>

제4조(사업)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관내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지도 육성 <개정 2013.1.28>
2. 새마을작은도서관 상호 협력 <개정 2013.1.28>
3. 읍·면·동 새마을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<개정 2013.1.28>
4.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료 정보의 교환 <개정 2013.1.28>
5. 문고지도자 상호간의 친목 도모 <개정 2013.1.28>
6. 시·군·구지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7. 기타 분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운영원칙)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,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. <신설 2005. 4. 12>

제 2 장 임 원

제6조(회원의 자격과 선임) 회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회 임원 및 해당 새마을문고시군구지부에 등록된 새마을작은도서관 회장,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관내 새마을작은도서관의 문고지도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 <신설 2005.4.12, 개정 2013.1.28>

제7조(회원의 권리 의무, 탈퇴 및 제명) ①본회의 회원은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, 회칙에 정한 임원 선출권, 피선거권, 각종 회의의 의결권 및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.

1.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새마을문고중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2. 본회의 회칙 및 결정사항의 준수
3. 새마을문고 지도자 기본회비의 납부
4. 본회 총회에서 정한 회비의 납부

③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 단, 새마을작은도서관 회장 및 부회장이 탈퇴한 경우에는 본직의 자격도 상실된다. <개정 2013.1.28>

④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, 본회의 명예와 신용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5. 4. 12]

제8조(임원) ①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 장 1인

2. 부 회 장 2인
3. 이사 5인 이내 <개정 2005. 4. 12>
4. 감 사 2인
5. 총 무 1인

②명예회장 및 고문을 둔다.

제9조(임원 선출)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시·군·구지부 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.

②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원 또는 문고운동에 관심이 많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③임원은 중앙 또는 시도지부 단위의 새마을문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④명예회장 및 고문은分会의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제10조(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단, 회장이 새마을작은도서관 회장을 겸하는 자는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.28>

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단, 보선된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③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제11조(임원의 직무) ①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에서 선출된 새마을작은도서관 회장을 위촉한다. <개정 2013.1.28>
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
3. 관내 새마을문고의 지도·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

④감사는 이 회의 재정과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

<개정 2013.1.28>

⑤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고, 회장단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무를 관리한다.

제 3 장 총 회

제12조(총회 및 소집) ①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총회로 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②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개최한다.

③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④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⑤회장의 유고 시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분회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 임시의장은 총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⑦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.

⑧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1. 임원의 선출
2.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
3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
4. 회비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4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①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회원의 제명 및 임원의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③분회와 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.

④총회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

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제 4 장 상 별 및 윤 리 위 원 회

제15조(상별 및 윤리위원회) ①새마을문고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

②회원이 본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.

③징계는 경고·해임·제명으로 구분하고 제명 및 해임은 총회 의결에 의한다.

④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포상에 관한 사항
2. 회원의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
3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
<본조신설 2005. 4. 12>

제 5 장 사 업 계 획 및 회 계

제16조(사업계획 및 예산) ①시·군·구지부에서 정하는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사업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시·군·구지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.28>

②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·군·구지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.28>

제17조(회계) ①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회원의 회비 <개정 2005. 4. 12>
2. 임원의 출연금 <개정 2005. 4. 12>
3.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
4. 기타 수익금

②회계지출은 소정의 승인절차를 거친 사업계획의 수행을 위하여서만 집행된다.

제18조(사업보고 및 결산) ①사업결과보고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,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초 2개월 이내에 시·군·구지부 회장에게 제출하

여야 한다. <개정 2013.1.28>

②전항의 경우 시·군·구지부 회장은 결산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4. 12>

제 6 장 보 칙

제19조(법령규정의 준용) 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 및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5. 4. 12>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198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1985년 5월 1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회칙은 2000년 4월 21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규정) 본 회칙 개정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시·도, 시·군·구지부 회장의 1차 임기 만료일(2001년 정기총회)까지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01년 7월 28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02년 4월 6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05년 4월 12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13년 1월 28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(보선된 임원의 임기를 포함한다)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1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

새마을작은도서관 준칙

전문개정 2013. 1. 28

제1조(명칭) 이 도서관은 ‘○○새마을작은도서관’ 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새마을작은도서관(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. 이하 “새마을작은도서관”이라 한다)은 새마을문고운동을 적극 추진하고, 독서생활화 활동으로 주민의 정신계발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①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지역 주민에게 자료 열람 및 대출·반납
2. 독서회 조직 운영 및 독서관장
3. 각종 취미·문화교양프로그램 운영
4. 도서구입비를 마련하여 장서 구입, 확충
5. 시·군·구지부 및 분회의 사업활동에 적극 참여
6.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

②새마을작은도서관의 자료 이용 및 각종 문화프로그램은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, 최소한의 경비를 자체 실정에 맞게 받을 수 있다.

제4조(설치) 새마을작은도서관은 전용건물, 마을회관, 동사무소 또는 별도의 건물을 지정하여 설치한다.

제5조(도서대출) 새마을작은도서관의 도서는 마을 주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가정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운영자와 자격) ①새마을작은도서관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0명 이내로 운영자를 조직하며, 여건에 따라 자체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운영자는 문고지도자, 회원, 자원봉사자를 말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문고지도자는 새마을문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, 새마을지도자 기본회비와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회비를 납부하는 자.
2. 독서회(동아리) 및 독서대학 회원으로 새마을문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, 새마을지도자 기본회비와 운영에 필요한 자체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문고지도자로 한다.
3. 회원은 새마을문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에 필

요한 자체 회비를 납부하는 자

4. 자원봉사자는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에 동참하여 활동하는 자

③ 새마을작은도서관 이용자란 자료를 이용하고,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7조(임원) ① 운영자 조직은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(관장) 1인

2. 부회장 2인

3. 감 사 2인

4. 총무(간사) 1인

②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.

제8조(임원의 선출)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새마을문고○○읍·면·동분회 회장이 위촉한다.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새마을문고읍·면·동분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마을문고시·군·구지부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
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) ① 회의는 총회와 월례회의로 한다.

② 총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개최하며 회원이 참석하여 임원 선출 및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의결한다.

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월례회의는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모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10조(재정) 재정은 회비, 마을기금, 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준칙은 2013년 1월 28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②이 준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(보선된 임원의 임기를 포함한다)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1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